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
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78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및 시설까지 확대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한국산업 표준 인증 제품 등 관련 법에 의해 인증 받은 방연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기준 마련(제2조).
- 나.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로 비치 장소 확대(안 제3조).
- 다. 협력체계 구축 명시(안 제7조 신설).

라. 방연마스크 비치 상황 점검과 정책 효과를 위한 평가 조항 마련
(안 제8조 신설).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방연마스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권장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아울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만족도 등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4. 1. 18.] [법률 제19213호, 2023. 1. 17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16.>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, 2024. 1. 16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